

# EHS 경영 위원회 운영 규정

## EHS 경영 위원회 운영 규정

2022년 4월 1일(제정)  
2022년 9월 30일(개정)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응그룹 내에 설치된 환경안전보건(EHS) 경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.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영향 최소화 그리고 위험요소제거 및 안전한 사업장 구현으로 친환경 및 무재해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각 법인의 정관, 이사회규정 또는 ESG 위원회에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권한)** 위원회는 법령, 각 법인의 정관, 이사회규정 또는 ESG 위원회에 정하여진 사항 이외의 환경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심의, 결의한다.

### 제 2 장 구 성

**제4조(구성)** 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.

- ① 위원회 위원장은 대응계약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되, 본사, 공장 및 연구소의 안전보건책임자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안전보건책임자의 임기로 한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처리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⑥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의 수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위원장의 권한으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제 3 장 운 영

**제5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① 회사의 EHS 법규 및 정책에 따른 운영 전략과 이슈 및 개선사항 심의
- ② 탄소배출, 기후변화와 관련된 운영목표, 전략수립 및 경영활동 심의
- ③ 회사의 EHS 경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
  - (1) EHS 법규 및 정책 강화에 따른 대응 방안 및 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
  - (2) 수질관리 및 수자원 절감 방안
  - (3) 대기 및 온실가스 관리방안
  - (4) 유해물질 관리 방안
  - (5)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한 작업장을 구현하기 위한 경영활동
  - (6) 환경안전보건 연간계획 및 EHS 경영 보고서
  - (7) 기타 위원회에서 EHS 경영과 관련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

**제6조(회의)** 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회의를 수행한다.

- ① 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심의·의결한 내용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매년 2회이상 활동계획 및 결과를 이사회에서 보고한다.

**제7조(관계인의 출석 등)** 위원회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관계인의 출석을 승인한다.

-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, 임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## 제 4 장 부 칙

부칙(시행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